

부속서 X
제3.16조제4항에 규정된 통신서비스

제 1 조
정 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1. “전기통신서비스”라 함은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하며, 방송은 제외한다.
2. “규제당국”이라 함은 이 부속서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쟁점들과 관련하여 할당된 규제업무를 위탁받은 기구 또는 기구들을 말한다.
3. “필수전기통신 설비”라 함은 다음과 같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가. 하나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고, 그리고
 -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설비

제 2 조
규제당국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규제당국이 어떠한 기본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와도 분리되고, 책임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규제당국의 결정과 사용하는 절차가 모든 시장 참가자에게 공정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규제당국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행정기관 및/또는 법원에서 이를 다룰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3 조 허가절차

1. 전기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그러한 허가를 위한 모든 허가 기준과 조건. 그리고
나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르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2.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신청자가 제1항가호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당사국은 신청자에게 허가를 합리적 기간 내에 부여한다.

3. 당사국이 허가신청을 거부한 경우, 당사국은, 요청이 있을 때, 그러한 거부의 사유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 희소자원

각 당사국은 주파수·번호 및 관로구축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할당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시행한다. 각 당사국은 할당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제 5 조 경쟁보장 장치

1. 지배적 사업자는 다음의 결과로 기본전기통신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요금 및 공급 관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이다.

- 가. 필수 설비의 통제. 또는
 -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2. 각 당사국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사업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되거나 이를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반경쟁적 행위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 행위
 - 나. 경쟁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이용으로 반경쟁적 결과의 초래. 그리고
 - 다. 다른 서비스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의 시의적절한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 6 조 상호접속

- 1. 상호접속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GATS에 의하여 규율된다.
2.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망 내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어떠한 지점에서도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상호접속은,
- 가. 비차별적인 조건(기술적 표준 및 세부사항 포함) 및 그 자신의 동종 서비스 또는 비계열 서비스 사업자의 동종 서비스 또는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동종 서비스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요금과 품질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시의적절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하고, 충분히 망이 세분화되어 있어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하지 아니하는 망 구성요소 또는 설비를 위하여 지불할 필요가 없는 조건(기술표준 및 세부사항 포함)과 원가지향적인 요금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 요청이 있을 때, 대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된 망 종단점에 추가되는 지점들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 구축을 위한 비용을 반영하는 부과를 조건으로 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4.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및/또는 상호접속 제공 지침을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5. 사업자들이 규정된 시간 내에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정의 협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 사업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호접속을 위한 적절한 조건 및 요금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련 규제당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관련 규제당국은 해당 시장 및 부문을 규율하는 일반 원칙에 따라, 그리고 이 부속서, 특히 제2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상호접속 조건을 결정한다. 이러한 지원은 특별한 조정절차를 포함한다.

제 7 조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의무는, 그것이 당사국에 의하여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며 당사국이 규정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부담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 자체로서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